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74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김민전 · 최수진 · 서천호
박수영 · 조배숙 · 곽규택
최보운 · 정동만 · 김장겸
장동혁 · 이철규 · 안철수
조경태 · 박준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

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와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롤용지의 제작·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납품 현황
2. 투표용지의 인쇄 및 납품 현황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수령·송부 및 투표소별 교부 현황
4. 투표소별 투표용지 사용량, 훼손량 및 잔여량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전까지 원지와 롤용지 및 투표용지의 수급현황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원지 및 물용지의 총공급량, 투표용지 사용량 및 잔여수량 등을 조사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수량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전점검의 절차·방법, 수량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투표용지수량기록조작죄) ①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입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1조의2(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와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롤용지의 제작·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u>1.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납품 현황</u> <u>2. 투표용지의 인쇄 및 납품 현황</u> <u>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수령·송부 및 투표소별 교부 현황</u>

황

4. 투표소별 투표용지 사용량, 훼손량 및 잔여량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기간 전까지 원지와 롤용지 및 투표용지의 수급현황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원지 및 롤용지의 총공급량, 투표용지 사용량 및 잔여수량 등을 조사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수량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신 설>

에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전점검의 절차·방법, 수량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투표용지수량기록조작죄) ①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입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